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림 대부지등이 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부등이 취소된 경우는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은 사람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대부료등 반환 신청을 취소가 있는 날부터 2개월 내로 기한을 정하고 있어 반환 신청기한을 삭제하고, 반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수대부자의 대부료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부등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 반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대부료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대부등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①영 제 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u>대부등의 취 소가 있는 날부터 2개월 내에</u> <u>별지 제17호서식에</u> 따른 신청서 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① ---- ----- ----- <u>별지 제17호서</u> <u>식</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u> <u>대부료등 반환신청서가 제출되</u> <u>지 않았더라도 대부료등의 반환</u> <u>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u> <u>대부등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할</u> <u>수 있다.</u>